

제410회 국회
(정기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2월4일(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
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8)
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6)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9)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7)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6)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4)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9)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7)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04)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상정된 안건

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 2
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8)
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6) 10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9) 10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7) 10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6) 10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4) 10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3) 10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9) 10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8) 10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7) 10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04) 10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10

(14시01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기회 중에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소위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답페이크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개정 방향에 대한 소위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합치되면 지난 소위에서 논의를 마쳤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를 규정한 동일 제명의 개정안과 함께 일괄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입법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

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158)

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893)

(14시02분)

○소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의 오창룡 조사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중앙선관위 관계 공무원으로는 김범진 법제국장이 배석하였으니 회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이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장영수 방금 소개받은 장영수입니다.

지금 국민투표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행 헌법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입니다.

1987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이후로는 2023년 현재까지 국민투표가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국민투표가 자주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제도권 실무권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재외 국민 국민투표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 개정이 없어서 기능 마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여러 국민투표법 개정안들에서 제안되고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관련한 쟁점들, 주요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공직선거법과의 통일성 때문에 정비되어야 할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과 국민투표법상 투표권 부여의 기준연령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투표인명부의 작성이나 투표운동 등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당시 정했던 기한이 도과되고 그 효력

이 무효화된 것과 관련해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제안되고 있는 것들 중에 있어서는 국민투표의 시행 절차나 공정관리에 관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고요, 일단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와 국민투표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서의 투표는 간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말하자면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유사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민투표건 선거에서의 투표건 투표라는 형식이 동일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체나 실현 방식 그리고 그 투표 결과의 집계 및 공표, 구속력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투표권자와 선거권자는 일정 연령에 달한 그리고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모든 국민입니다. 즉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그 인정요건이나 제한사유에서 양자를 구별해야 될 어떤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이상은 달리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표라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자명부의 작성이나 투표운동의 관리 등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크고, 물론 치열한 경쟁이 예외 없이 벌어지는 선거와 비교할 때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찬반이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선거운동과 투표운동을 똑같은 기준으로 인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치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사안 여하에 따라서 웬만한 선거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컨대 관권선거에 못지않은 관권투표의 위험성도 있고 금권선거의 폐해에 못지않은 금권투표의 폐해도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시다만 2009년 일부 개정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타법 개정이 한 번 있었을 뿐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공직선거법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해마다 거의 두세 차례 정도씩은 개정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직선거법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변화 등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투표법은 그렇지 못하다 이 점이 상당히 크게 문제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투표 기준연령의 통일성 문제라든지 투표인명부 작성이나 투표운동에 있어서의 통일성,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기존의 개정안들에 있어서 적절하게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투표, 공직선거를 같은 날 실시할 경우에서의 특례 규정 같은 것이 김영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무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 절차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의 국민투표법상의 사항을 공직선거법을 준용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날 실시하는 경우는 준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 예컨대 선거운동과 투표운동이 중첩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관련 운동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한 재외국민의 투표권 조항들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만 이것은 결정만 하면 사실 공직선거법에도 관련한 규정들을 세밀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오면서 해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의 시행 절차나 공정 관리에 관한 개선안들, 이와 관련해서 공고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개정안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예컨대 김영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서는 헌법 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130조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부여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길게 해서 60일로 두고 있는 반면에 유상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에서는 두 가지 다 30일로 정하고 있는 이런 편차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헌법에 직접 30일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손댈 여지가 없지만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안과 달리, 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에 의결되기까지 60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알았다, 그런데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그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헌법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헌 사항들이 워낙에 복잡하고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중요 정책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 숙지를 위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또 외국의 입법례,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 숙려기간의 의미에 있어서 국민투표의 공고 기간을 아주 길게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부여한 중요 정책은 좀 시급성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 30일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보고 결론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야 의원님들께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투표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처럼 자주 개정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에 좋은 조항들을 하나하나 집어넣기 보다는 공직선거법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계시켜서 공직선거법에 달라진 조항들이 국민투표법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룡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창룡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창룡입니다.

저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투표제도의 특징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 쟁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2015년 12월 31일이었지만 현재까지 입법 미비 상태이며 현행 법률에 따라 국민투표법을 시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투표법에는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변경한 투개표 절차 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부개정 이후 소수의 일부개정만이 있었습니다. 반면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이 현재까지 총 96회 개정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 연구는 재외국민투표 개선, 사전투표제도 도입, 단체의 선거운동 요건 명시, 공정국민투표지원단 설치 등을 향후 국민투표법의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투표제도의 특징입니다.

해외 주요국에서 국민투표는 법률, 공공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도입됐으며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와 함께 직접민주제적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국민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국민투표가 남용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많이 시행한다고 하여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현안을 결정하는 데 국민투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90년 이후 국민투표를 시행

하지 않은 국가로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의무 조항으로 두지 않거나 일부 사안에 한정하여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쟁점과 개정안 발의 현황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하는 쟁점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해 전부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은 국민투표 개정 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 공직선거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들은 상호 충돌하는 바가 적으며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개정 방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헌을 추진하는 경우 국민투표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므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며 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을 시급히 이루어서 제도를 정비하고 직접민주제적인 국민의 참여권을 온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이 시급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24일 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로 거의 10년 가까이 이 국민투표법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헌재가 제시한 시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2023년 오늘까지도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 국회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가 오늘 본격화되는 만큼 좋은 논의를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들께서 진술인들께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시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안 계시면 우선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장영수 교수님께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소위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과의 유사성 또 관리상의 기술적인 유사성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대표발의한 안 중에 선거운동 할 때의 중첩 문제라든지 실제 같은 날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혹은 총선 때, 지방선거 때 개헌안이 상정돼서 한다든지, 국가 중요 정책을 여러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선거운동하고 국민투표하고 이게 정치적인 민감함 때문에 사실상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까 제시하신 것 중에 추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장영수 예,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거운동 했었을 때 선거운동 하는 그룹, 말하자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분리되느냐 아니면 겹치느냐, 겹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평소와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느냐, 또 관련해서 비용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비용으로 책정하는 것과 투표운동 비용으로 책정하는 것을 그냥 단순 합산할 거냐 아니면 이런 중첩되는 것을 빼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그냥 1.5배로 합시다, 1.8배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투표의 공고일 60일이 좀 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 법안 준비할 때 이 대목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 숙의 기간이 없고 이게 정쟁에 휘말리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진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 60일 정도는 해야 그래도 논의가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지금 말씀대로 오히려 30일이면 국가 중요 정책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용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이유 이외에 혹시 또 다른 추가 설명……

○진술인 장영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중요 정책’ 했는데 헌법 조문상은 ‘외교·국방·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 정책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방이나 통일 문제 같은 것은 시간을 길게 하기보다는 빨리 결정해야 될 시급한 경우들이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까 스위스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부의한 정책보다는 국민이 발의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은 진짜로 숙의 기간이 필요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헌법 제72조에 따른 중요 정책 이쪽에 대한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칙 조항을 재검토하자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루어졌던, 87년도의 국민투표를 빼고 그 이전의 국민투표들은 관제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고 현재 있는, 전부개정안 말고 현재 법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국가적 상태 이런 것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조항들이, 너무 낡은 조항들이 많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이야 지방자치가 다 실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공직자들도 사실은 선거법과도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국민투표라 하더라도 오히려 조금이라도 부정선거 혹은 아니면 어떤 관의 개입 혹은 외부 세력의 어떤 개입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는 국론 분열을 굉장히 가속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별칙 조항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술인 장영수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취지는 공직선거법의 별칙 조항에 비해서 국민투표법상의 별칙 조항은 그중의 일부만 가져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성질상 부합하는 것은 다 가져오자, 그냥 준용해서 다 가져오는 게 오히려…… 공직선거법은 뭐가 안 되는데 국민투표법은 된다? 성질상 안 맞는 것만 빼면 되지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조해진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김영배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장영수 교수님께 원론적 차원에서 의견을 여쭙보고 싶은데요.

개헌도 그렇고 또 국가 중요 정책도 일단은 나라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진술인 장영수 그렇지요.

○조해진 위원 그런데 이 중대 사안을…… 법률이나 일반 정책은 국회에서 그냥 상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표결을 통해서?

○진술인 장영수 예.

○조해진 위원 여야 합의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표 대결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두는 취지가 의회 내에서 당파 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 또는 그 의사 다수·소수, 이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사안을, 헌법 개정 사안이나 또는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국회 내 절차에 부치는 그런 방식이라면 국회 안에서도 되겠지요. 합의하든 표 대결을 하든 간에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하고 중요 정책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이게 될 텐데, 그런 절차가 법률이나 일반 정책은 수시로 되고 있는데 별도로 헌법 개정하고 중요 정책은 따로 떼어서 국민에게 직접 물어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파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당 간의 표 대결로, 표 많은 쪽에서 사실상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의식이 많은 쪽에서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 원론적인 표현대로 하면 당파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또는 국익의 차원

에서 또 나라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이것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또 다르게 보면 국민이 자기가 지지하는 당을 떠나 가지고 국가적 차원 또는 국익의 차원 또는 나라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라, 국민이라는 헌법기관 어떻게 보면 헌법 제정·개정 기관이 초당적 차원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당파의 정파성에 기속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해서 의사결정을 하라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거든요, 이것 별도의 국민투표제도를 둔 이유가. 그리고 깊이 숙의해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국익을 생각하고 해서 깊이 숙의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국민투표라는 별도 절차를 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국민투표에서, 어떤 헌법 개정 사안 또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라는 절차에 없었을 때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상적 차원에서 개개인 국민이, 투표권자인 국민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그 당의 노선, 정치적 입장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제3의 어떤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헌법 개정 사항, 중요 정책에 대한 그 정당의 입장,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보고 그 정당 입장대로 따라가는 투표를 할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결국 국회 안에서 그 대표자인 의원들끼리 투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거든요, 국회 안의 표결 절차하고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거창하게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두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할는지.

그리고 또 국민투표법에 보면, 이 제도에 보면 투표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투표운동? ‘개헌은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운동, ‘이 정책은 찬성해 주십시오 또는 반대해 주십시오’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투표운동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운동을 실질적으로는 정당들이 다 할 거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나 조직을 가진 게 결국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들이 다 할 거고. 정당들은 그 당의 입장을 호소해서 그 당 입장대로 표 찍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고.

현실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대로라면 국민투표라는 게 있을…… 별 의미가 없는 거

거든요,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을 다른 형태로 한번 더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술인 장영수 일단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상 국민투표가 헌법 개정과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 정책이 서로 다릅니다. 헌법 개정은 필수고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중요 정책, 의무적으로 다 국민투표……

○조해진 위원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 길어서 구분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 헌법 개정은 대부분 국회 내에서 합의로, 3분의 2가 넘어서려면 합의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로 되는 것이어서 약간 예외적인 성격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성격이 강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진술인 장영수 일단 구분한다면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의 의미가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다수로 통과된 이후에 확인하는 정도니까 그 점은 조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중요 정책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이래 봤자 국회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 없다면 국민투표에 부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사안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이런 경우들입니다. 예컨대 지금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면 통일할 수 있습니다. 한때 통일했었을 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일을 하다 보니까 독일의 경우보다도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독일도 초기에는 통일 비용 부담 때문에 서독 내에서 통일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꽤 컸었거든요, 지금은 한 30년 넘게 지나 가지고 확 달라졌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지금 통일을 해, 말아?’ 통일을 해도 당장은 찬성하던 국민들이 통일 비용 부담 때문에 나중에 ‘왜 통일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실제로 통일 당시에 총리였던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그 직후에 실각했거든요.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통일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욕먹을 게 뻔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의 당파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국민에게 직접 물어서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자, 그러면 국민들도 자기가 결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정부 탓, 여당 탓 이런 식으로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필요하니까 이 제도를 두자이지, 어떤 여야 간의 정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모든 사안을 국민투표로 가자 그것은 아닙니다.

○조해진 위원 그 경우에 여야 정당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경우하고 안 정하는 경우가 다를 텐데 그것은 초당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파적 입장을 정하지 않겠다,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현실에서 모든 것을 정치화하고 그래서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심지어 공약을 했던 것을 뒤집는 당론을 만들기도 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것에 정치적 개입하려 그러고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정당의 입장을 정하려고 하고 정하면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고, 그런 현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진술인 장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구요. 다만 결국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초당적인 사안이고 그런 당파적인 성격과 상관없이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 한번 부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지금 현재까지 1987년 이후 국민투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식으로 초당적으로 결정할 만한 적절한 사안이, 다시 말하자면 당파적인 그런 결벚어나는 사안이 별로 없었다 그런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해진 위원 하나만 더 말씀, 투표운동 이슈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숙의를 위해서 국민들이 당파성의 영향받지 않고 국가성, 국민이 국익성 이런 것에 착목해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투표운동을 금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정보만 주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완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하듯이 정당이 개입해 가지고 자기 방향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

고 중간에 절충,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진술인 장영수 저는 일단 중간의 절충은 기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 허용하느냐 마느냐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해야 될 거고 안 한다면 아예 금지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마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는 ‘투표운동, 정당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시민단체들도 할 수 있고 나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선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한 번씩 거치게 만드는, 다시 말하자면 공론장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 다 잘 아시겠지만 선입견 가지지 않은 국민들이 양쪽 전문가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선거운동과는 달리 투표운동에 있어서는 중요 정책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이런 절차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혁 위원 저는 조해진 위원님의 의견에 있어서 투표의 기능이 무엇인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그것이 최선이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답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결정을 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수용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투표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안보·국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투표운동 과정에서 아니면 결정 과정에서 당론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저는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라고 하는 게 그것이 결정되어졌을 때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최종 결정권자가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어졌을 때, 비록 나는 반대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 다수가 결정했을 때 반대했던

분들도 분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그것이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고 어떤 때는 당의 입장들이 투표운동 과정에서 반영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또 혹시 안 계시면……

문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진석 위원 장영수 진술인에게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고기간을 헌법 개정안은 30일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고 또 중요 정책에 대해서 60일은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장영수 예, 맞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저도 약간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정보의 유통 속도가 과거보다는 훨씬 빨라졌고 또 폭넓게, 속도도 빨라지고 내용도 깊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과한데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진술인 장영수 저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걸 10일, 15일 하기는 또 그러니까 30일 정도로 통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진석 위원 30일요?

○진술인 장영수 예.

○문진석 위원 그런데 30일 정도면, 사실 국민투표라는 게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모르고 투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알고 찬반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헌법 개정 같은 것은 사실 공청회도 즉 개최하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대강의 내용들은 알 수가 있을 텐데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30일은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진술인 장영수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데 헌법 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1조부터 130조까지 다 고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수십 개 조항이 고쳐지는, 다시 말하면 수십 개 안건이 올라오는 이런 상태가 될 거거든요. 반면에 중요 정책의 경우에는 적으면 하나, 많아도 너댓 개 이상 되기는 어려울 거다. 즉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의 숫자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비롯해서 정보유통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김범진 법제국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김범진 예.

○소위원장 김영배 아까 장영수 교수님도 그랬고 아까 오창룡 조사관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선거법을 대폭 준용해서 단속 부분이나 아니면 선거운동과 관련, 그러니까 투표운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김범진 장영수 교수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국민투표법에서는 교육, 종교, 직업적 특수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은 제 생각에는 과거 관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던 시기의 유산이 아닌가,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직선거법과 궤를 같이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처벌 규정이나 절차 규정, 전반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국민투표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공고기간 60일에 대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장영수 교수님께서 공고기간 60일이 조금 길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2014년 7월 24일 날 헌법불합치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명부 신청기간만 저희들이 91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명부 작성기간도 해외에서 작성을 해서 국내에서 그걸 검증을 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열흘 정도의 작성기간은 부여하고 최종적으로는 선거일 전 30일 전에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보다 더 단축을 하게 되면, 특히 72조의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재외

국민들의 명부 작성의 신청이라든지 작성기간에 있어서 약간 저희가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저희가 개정의견을 제출했을 때도 현행 국민투표법상 최소 선거일 18일 전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된 128조 2항은, 어차피 헌법에서 투표일을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72조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과는 달리 국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재외 국민들이 신청을 하고 또 명부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실 때 같이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오늘 논의된 내용들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선관위에서도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다음번 우리 회의 할 때 심도 있게 다루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김범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976)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069)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447)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26)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24)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35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569)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08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417)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504)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738)

(14시46분)

○소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총 1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 신설 부분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지난주 소위 심사경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딥페이크 관련 정개특위 제1소위 논의경과’라는 세로로 된 A4 용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생략하고요.

딥페이크 규제 관련 주요 논의사항을 보시면,

먼저 현재 규정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더라도 규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딥페이크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딥페이크라는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미표시하면 바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처벌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표시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 관련해서 두 가지 크게 보시면 딥페이크 규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이 있는데 2개를 나눠서 먼저 1번, 저희가 전번에 소위 심사 시에는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고 그 개정안은 딥페이크 규제 관련해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의견에서 표시의무 부과 관련해서 표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이런 수정의견을 드렸습시다라는 소위 회의에서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 ①-㉠-㉡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딥페이크 영상 등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상시 전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외국 사례와 같이 선거일 전 일정기간에 전면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말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정의견에서 드렸을 때는 후보자 등 관련성을 해서 표시의무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시다라는 후보자 관련성은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된다는 수정말씀을 중간에 제가 다시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가중처벌 관련해서는 소위원회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또 방법이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별도의 벌칙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현행 허위사실공표죄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먼저 별도의 벌칙을 신설하게 된다면 이것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서 허위사실 공표 가중처벌을 하는데 후보자 등 관련성과 무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 당선·낙선 목적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가중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할 경우는 후보자 등 관련성을 띠는 경우만 처벌하고 당선·낙선 목적을 구분해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저번에 저희가 소위 자료에서 수정의견으로 드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타 의견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 가상인물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3개의 안을 해서 조문대비표로 별도로 다시 뒷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심사하면서 참고하실 사항을 2페이지에 적시를 했습니다.

먼저 범죄 구성요건 측면인데 딥페이크 영상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한다 그럴 때는 죄형법정주의와 크게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법제에는 한 9개의 법률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범죄 구성요건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협회에서는 이게 프로그래밍 영역인지 딥러닝 영역인지 머신러닝인지 그 범위가 모호하다고 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저희가 자구 수정한 부분을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처리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법체계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저번 소위에도 자료에는 표시를 했었는데 먼저 허위사실 자체를 유포했다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을 보시면 유사하게 사회혼란을 위해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날조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라는 그것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유언비어를 날조했다 해서 바로 처벌받지는 않고요. 다만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게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정보통신망법, 형법은 5년 1000만 원, 정보통신망법은 7년 5000만 원 해서 공직선거법보다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익(판매) 목적 이것은 특별하게 아니고, 선거운동 목적으로는 물론 정당법에 당대표 경선도 있고 위탁선거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라는 공직선거법만 보시면 당선 목적으로

해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때 5년 3000만 원, 이것은 후보자 비방이 아니라 자신의 이력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명예훼손은 아니나 선거 목적상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에서 특별히 처벌하고 있고요.

낙선 목적은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습니다. 7년,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과 비교해 보면 하한이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서 뒷부분에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거운동 제약 측면이 있는데 딥페이크 관련 선거운동을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사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부분의 선거운동, 특히 후보자라든가 선출직 공직자가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제약을 가질 수 있고 또 고소·고발 양산되는 측면도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전면 금지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인데, 음영에 선거일 전 30일이든 60일이든 이 부분을 넣으면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고 음영을 삭제하면 상시 제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는 부분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 등’이라고 저희가 해 놓은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라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고요. 대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사실상 인공지능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다라는 부분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음향, 이미지, 영상(딥페이크영상 등)’으로 해서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전체 금지하는 것이고 이것을 금지했을 때 벌칙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일단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부정선거운동죄에 보면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이 영화 등 상영·게시, 문서·도화 살포·상영은 2년 이하 400만 원이니깐 이 둘 중에 적절한 수준으로 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와는 무관하게 만든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이 되겠고요.

250조 4항을 별도로 해 가지고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그것을 규정을 하다 보니 후보자 등 관련성을 굳이 해야 되느냐는 지적도 있으셔서 그걸 빼고 나면 두 개를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낙선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7년 이하,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공직선거라는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처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4쪽, 이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소위 수정의견으로 드린 부분입니다.

표시를 하면 과태료를 하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것 자체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안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마는 표시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 내용이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기는 하는데 표시를 안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가중처벌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이것은 낙선과 당선을 구분하고 후보자 관련성을 요하는 형태로 되어서 지금 선관위에서 하는 법규운용기준을 일부 보완해서 문제점을 다소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기타의견 이것은 가상인물 금지범위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존비속 이런 부분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벌칙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로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보다도 만들지 말라는 금지 행위에 대한 벌칙이 되겠고요.

여기에도 ‘AI 후보’ 등 이런 후보자의 단순 공약 설명 제작물을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또 이 기간을 아까 제일 처음에 전면 규제했던 것처럼 선거일 전 며칠 동안 못 하게 할 것인지 여러 가

지 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 가지 내용을 드렸습시다만 전부 다 각각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관위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는 지금 현행법 250조, 251조, 253조 가지고 딥페이크 영상 등 관련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선거법에 규정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될지는 규제의 필요성 그다음에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행위는 조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 그리고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측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의견을 좀 드려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딥페이크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상당히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여러 측면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른 오프라인 선거운동이나 인터넷 선거운동과는 다르게 AI가 생성해서 하는, 전파 속도는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또 이게 진짜·가짜 구분뿐만 아니고 굉장히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어떤 유사품 이런 것도 굉장히 나올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장동혁 위원님이 굉장히 우려하셨던 그런 부정적 영향 이런 것을 선거운동 기간에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후 해서는 일정한 조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표식은 무조건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전제는 표식은 당연히 무조건,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만든

것은 일단 이걸 딥페이크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도록 하고, 그건 별도로 하고.

두 번째로 허용 그다음에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이걸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처벌 규정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일단 큰 틀에서는 좀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혹시 다른 의견들이, 혹은 기간을 좀 더 늘리자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요건들에서 어떤 어떤 부분들이 추가돼야 된 다든지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제가요.

○소위원장 김영배 맹성규 위원님.

○맹성규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보시면 선거기간 동안에 금지를 시켰다고 설정을 해서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 해 가지고 신설 조항이 있다고,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선거운동 기간, 예를 들어서 금지해 놔다고 그러면 그 기간 바깥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금지시키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거나 관계없이 이 기간 안에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리거나 간에 먼저 금지된 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그 금지된 기간 외에……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3페이지 ①-㉠ 조문과 4페이지 ①-㉡ 조문은 다른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 조문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전부 싹 금지하는, 기간 설정 없이 무한대로 모든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다 딥페이크를 쓸 수 없다 이 규정이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

○소위원장 김영배 예, 4페이지 보충설명 좀……

○전문위원 신문근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만약 한다면 차라리 5페이지에 있는 벌칙처럼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못 하게 한다면 부정선거운동죄 중에 하나를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쨌든 그런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한 그 자체를 처벌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3페이지와 4페이지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됩니다. 3페이지 선택할지 4페이지를 선택할지 5페이지를 선택할지……

○이원택 위원 선거운동 기간에 전면 금지한다고 그러면 후보자가 만든 답페이지도 금지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문근 소위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별표 해 가지고 ‘AI000’ 이것처럼 후보자가 만들어 놓은 단순 공약 설명 자료를 허용하려면 단서 규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원장 김영배 그거 몇 페이지에 있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3페이지 위에 보면 괄호 해서 ‘단서 규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예외 추가 여부 결정 필요’라고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후보자가 단순 공약 설명을 위해 제작한 경우 이것도 표시를 하거나 하면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예외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면 금지하시려면 단서를 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 단서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야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자, 후보자 가족, 직계가족까지만 표시를 해 가지고. 특히 대선은 또 가족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와 후보자 직계존비속 어디까지는 설명 자료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면 그 부분은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그 기간 동안에 전면 금지되는 형식으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지요.

○이원택 위원 저는 후보자가 답페이지 기술을 활용해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선거운동 하는 것은 열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후보자가 아닌 자가, 그러니까 제3자가 후보자 동의 없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답페이지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그것은 후보자 동의를 전제로 돼야 되는 거고 동의 없이 만드는 건 처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표시 의무라든가 허위사실에 대한 해당이 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의 없이 할 경우는 처벌하면 될 것 같고.

지난번 회의 때 나왔던 건 뭐냐 하면 후보자가 아닌 반기문 씨라든가 제3자를 활용해서 뭔가 직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인터넷상에서는 선거운동이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지지 발언 이런 게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SNS상에서는.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답페이지 기술을 제3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반기문 씨든 유명인사들, 제3자의 동의 없이 그걸 활용해서 낙선운동이나 당선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제3자의 동의 여부가 하나가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 허위사실인지, 그다음에 답페이지라는 걸 실었는지 이런 것에 다 처벌 조항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3자를 활용해서 후보자가 아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는 지지 여부가 열려 있는데 답페이지 기술을 쓰는 것은 막는다 지금 이런 취지잖아요. 그리고 전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이것은 아까 답페이지 기술, 그러니까 도용의 여부가 있잖아요. 도용의 여부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답페이지 기술의 표시 여부가 있고 허위사실 문제가 있고 이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른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 저는 논의의 출발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페이지 영상은 다른 규정을 두지 않으면 지금은 허위사실로 처벌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답페이지 영상 자체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의의 출발은 대선 때 AI로 후보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과연 처벌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 논의의 출발점이 생겨난 거고, 그러면 우선은 답페이지 영상을 허용하겠다는 거고 하면 허용은 하되 그것이 선거운동과 관련했을 때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기간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허용하도록 한다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다 그것이 답페이지 영상임을 저는 반드시, 그러니까 허용한다는 전제에서 합니다. 저는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입법정책적으로 허용하자고 하면 반드시 저는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표시하지 않으

면 그 자체가 그다음에는 형벌로 넘어가야지 과태료로 넘어가면, 지금 이 구조대로라면 허위사실만 포함되지 않으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것 표시 안 하면 그냥 과태료 내고 말잖아요. 과태료 내고 말지요. 뭐 하려고…… 그것 뭐 하러 표시합니까, 돈으로 때우지.

저는 이 딥페이크 영상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두면 선관위가 이거 허위사실로 적발해서 처벌하더라도 후보자로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허용해 줄 거냐, 허용해 준다면 반드시 표시는 하도록 하자, 표시 안 하면 형벌, 허위사실이 들어 있으면 가중처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운동 목적인지 뭔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대부분 예전에 180일이었다가 120일로 했으니까 120일 안에는 무조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표시하고, 안 하면 바로 형사처벌되고 허위사실이 있으면 가중처벌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되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것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지는 않겠지만 딥페이크 영상에 허위사실까지 더해지면 가중처벌, 그런데 딥페이크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저는 그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일정 기간 전면금지 부분도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냐?

○장동혁 위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그 이전에, 물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은 저는 기간에 상관없이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매우 기술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120일 정도 딱 되면 사실은 그냥 웬만한 영상은 선거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전부 다 표시하고 아니면 처벌받고, 결국은 이게 120일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그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진석 위원 저도……

○소위원장 김영배 예, 말씀하십시오.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 주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지요, 사실은. 그

런데 실무적으로 허위사실로 인해서 승부가 갈리거나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선관위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이것을 시정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린다든가 이런 게 사실 현실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한 달까지는 아니고요.

○문진석 위원 어쨌든 저희도 한 번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가 안 돼요.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면, 물론 단서 조항을 달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관위 업무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본래 취지인 선거운동을 좀 더 개방적이고 더 확대시키는 좋은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 기간 정도는 금지할 수 있고, 후보자가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적 뜻을 품고 하는 것은 120일 전에는 충분히 딥페이크를 활용하든 어떤 방법이든 활용해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선거운동은 워낙 짧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큼은 좀 금지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피해 보는 사람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형두 위원 제가 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예,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예컨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자기 사진, 명함에 쓰거나 또는 선거 홍보물에 쓰거나 하는 사진을 제시나 게시를 할 때 사실은 포토샵 기술을 통해서 현저하게 사진을 조작·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명함이라든가 또는 홍보물에 쓰여진 사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참고로 하려고 한번 여쭙

보는 겁니다. 그건 사진이 본인 사진임을, 본인 외의 사진을 쓰면 안 된다 이것 말고는 기준이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본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하게 제한하는 것은……

○최형두 위원 제한은 없지요? 그런데 최근에 기술이라는 게, 딥페이크 문제가 아니라 포토샵 기술로 하면 사진을 거의 30년 전 얼굴로도 환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없는 셈이지요? 그건 사진 기술과 또 포토샵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오인하게 할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딥페이크 기술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르고 ‘AI 누구입니다’라고 후보를 하지만 그 AI 후보가 여러 외모라든가 또는 이미지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원래 후보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이 법안 만들 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해외 주요 입법 사례를 준용해서 지난번에 입법조사관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민주당이 강세인 리버럴한 주입니다. 그런데도 공식 선거일 60일 이내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만적인 오디오·비주얼 미디어 유포 금지로 하고 있거든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 론스타의 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보면 어쨌거나 30일 이내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아예 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의 규정이 이거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금지하는 이런 것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지난번 논의의 주요 내용이 사실 법안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허위·조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법안을 보면 마치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인하기 딱 좋게 법 조항이 구성돼 있어서, 그렇게 읽히기 쉬워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신설되는 개정안에서 텍사스주법이라든가 캘리포니아주법 그리고 EU 인공지능법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그 법안 내용을 준용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신문근 답변드릴까요?

○최형두 위원 예.

○전문위원 신문근 지금 저희가 이걸 준용하기 보다는 우리 선거법에 독특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가급적이면 그것과의 관계를 해 갖고 벌칙을 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5페이지를 봐서 120일 전에 금지해야 되는 부분은 후보자라든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런 분들에 대한 가상인물 이걸 직접적으로 아예 못 만들도록 한다 그리고 이럴 때는 바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시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러면 120일 전이나 상시 표시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태료로 가면 두 개를 같이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선거법 벌칙 규정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넣다 보면,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낮지 않은 수준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낙선 목적뿐만 아니라 당선 목적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되게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틀테면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신 분이 자기의 어떤 감사 인사를 딥페이크나 뭐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상시 선거운동으로 띄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선거운동이나 아니냐, 딥페이크를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나중에 따지게 된다면 해석상 좀 복잡한 영역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장동혁 위원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맨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원론적인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허위사실 유포는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문근 없습니다.

○장동혁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0일 이때는 표시해야 되고 안 하면 벌칙, 형벌 가하고 허위사실이 있으면 가중처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20일 그 이전에 딥페이크 영상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해석상으로 보면 우리가 특별히 규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형벌 규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딥페이크 영상은 허위사실입니다.

그 전에도 허위사실이에요. 120일 이전에도 딥

페이크 영상을 쓰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영상에 허위 내용만 없으면, 그 내용 자체에 허위 내용이 없으면 선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딥페이크 영상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누군가 120일 이전에 딥페이크 영상을 쓴 것에 대해서 ‘이 영상 자체가 허위사실 아닙니까?’라고 한다면 법에는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부터 규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는 표시하도록 하고 안 하면 그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지 허위사실은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선거 목적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썼는데 120일 이전이면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딥페이크 영상이어서 다른 후보가 ‘딥페이크 영상 자체가 허위사실입니다’라고 하면 다시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그 이전 기간에는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법기술적으로 어떻게…… 여기에서는 허위 내용만 없으면 딥페이크 영상은 이 기간에는 허용할 거고 허위 내용이 있든 없든 이 기간에는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표시하도록 하고, 안 하면 처벌할 건지에 대해서 이 규정만 가지고는 그 전 단계에 대한 규정은 저는 없다, 반대 해석상 그럴 수는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형벌 규정인데.

○전문위원 신문근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는 상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사용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같이 두면 지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커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120일 전부터는 아예 사용 금지하겠다고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20일 전에도 사용은 하되 표시해라 그러면 뭐……

○전문위원 신문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소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그런데 120일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사용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허용하고 선거운동 120일 전부터도 허용은 하는데 조건이 붙는 거지요. 120일 전까지는 표기만 하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허위사실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별도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물이 120일 전에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이건 딥페이크입니다’ 표시를

하고 120일 전까지는 이게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쓰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120일부터는……

○장동혁 위원 아예 못 쓰게……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쓰게 해야지요. 쓰게는 하되……

○이원택 위원 후보자에 한해서 하면 돼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신문근 위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벌칙을 다르게 하는 게 어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일 전까지는 쓰게 하되 위반을 하면 과태료로 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가까워지면 120일부터는 딥페이크라고 표기를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사벌을 주자 이거지, 벌칙을 강화해서.

○장동혁 위원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는 표시하고 쓰되 아예 못 쓰게 하는 기간을 120일이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그때는 아예 못 쓰게 하고, 아예 표시를 하든 뭘 하든……

○문진석 위원 15일 동안이요?

○장동혁 위원 예, 15일이든 아니면 30일이든 60일이든.

○문진석 위원 15일은 너무 짧아.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못 쓰게 한다면 그 기간을 60일이든 120일이라고 하시면 그것도 120일로 하고 그 전에는 표시하고 쓰되, 저는 표시 안 하면 그것도 처벌해야지요, 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쓰는 건데.

그리고 저는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설명하면 되지요.

물론 그것을 이용하면 더 활용할 수 있겠지만 딥페이크 영상을 허용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AI를 이용하면 좀 더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굳이 그거 포기하고, 일정 정도 감수하고 필요하면 정책이나 공약은 후보자가 직접 설명하고 그 영상 찍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굳이 딥페이크 영상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간을 설정을 해서 금지시킬 거냐 아니면 허용을 그냥 하되…… 그거 먼저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지요.

혹시 선관위에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처음에 이원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가 자신의 영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 하는 부분, 이것은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하면 선거운동 하는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3자가 후보자 동의를 받지 않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부분은 지금 현행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의해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 등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허용 필요성 그것을 전제로 하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금지하자는 부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금지하는 것이 좋은지는 아까 문진석 위원님도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행위는 실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삭제 요청을 하지만 삭제 조치하는 데도 일정 시간이 걸리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해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일정한 기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사무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문진석 위원 저 문진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죄송합니다.

○문진석 위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취지인데 이게 사실은 격전지일수록 허위사실에 의한 승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기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한 달이 됐든 60일이 됐든 규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혁 위원 선거운동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선거운동에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막아 놓은 것은 그렇게 선거운동 하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도 있고 국민들한테

잘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막아 놓은 거거든요.

사실 애드벌룬도 사용하고 뭐도 하고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또 금권선거가 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해 봤습니다.

저는 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사용해서 좋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겠지만 그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다면 일정 정도 제한하고 그 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조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문근 예.

○조해진 위원 3페이지, 제250조 4항에 ‘당선되거나’ 이거는 후보자 본인인 경우지요? 나머지는……

○전문위원 신문근 예, 선거운동 규정,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구입니다.

○조해진 위원 ‘당선되거나’는 후보자 본인,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이거는 후보자 이외의 타인?

○전문위원 신문근 예.

○조해진 위원 저는 단순 공약 설명도 표시는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말씀 중에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면 딥페이크도 허용돼야 된다는 취지셨나요? 후보자 본인이 동의하면……

○이원택 위원 아니,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동의를 구한다면 동의의 범위, 대상이 별도로 논의돼야 되는데 복잡할 것 같아요.

○조해진 위원 그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후보자가 동의를……

그러니까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후보자를 해하는 건 당연히 그것은 뭐 동의 여부 관계 없이 규제를 받아야 될 텐데 후보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동의 없이 하는 경우 그것은 곤란하니까 동의를 얻도록 하라는 것 같은데 후보자 본인이야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동의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게 경쟁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경쟁자가 동의해 줘 가지고 제3자가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유권자는 속이는 거고 나한테는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마구 허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3자를 사용했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제3자가 나를 이용해라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부분 질문 그 이슈하고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냥 다 허용되느냐는 또 그것도 아닌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데 유권자들은 이제 다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측면 그리고 이제 그 경쟁 후보자는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는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시지요.

○이원택 위원 저는 후보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은 표시의무랄까 허위사실 적시만 아니면 좀 열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구요.

나머지는 사실 이제 허위사실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한다, 인터넷상에서. 그것은 표시의무를 줬으면 좋겠고.

선거일, 선거운동 기간이나 아니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정도 설정해서 그 기간에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 불이익이 더 많을 개연성이, 억울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운동 기간은 좀 짧아 보이고 그 앞쪽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전후 해서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대신에 후보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후보자에 한해서는.

○소위원장 김영배 이게 참 고민되는 지점들이지요.

그러니까 120일 말고 지금 우리가 선거법상 일정을 할 수 있는 게…… 예비후보 등록이 120일이지요, 120일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예, 120일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120일 말고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

○전문위원 신문근 공직자 사퇴 기간이 90일이라는 합니다는 저번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 가지고 표시, 시설물 그것도 180일에

서 120일로 했고……

○맹성규 위원 예비후보가 며칠이예요?

○소위원장 김영배 120일이예요, 120일. 12월 12일이 120일이거든.

그러니까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능한 시기를 언제까지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맹성규 위원 120일 전까지 하고 표시하게 한다 그 얘기 아니예요, 지금?

120일 전까지는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진석 위원 딥페이크 영상은 기본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소위원장 김영배 딥페이크는 선거 관련된 거면 무조건 상시적으로 표시를 해야지요, 표시하는 건 당연히 표시의무를 해야 되고.

○맹성규 위원 그런데 선거 관련했다는 거를 누가 어떻게 판정하냐 이거야.

○소위원장 김영배 그것은 선관위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조사를 받게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거니까요.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120일 기준으로 해서 끊어 가지고 아까 장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런 골격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120일부터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후보자가 만든다고 하는 것이 본인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자가 만들 때도 다양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맹성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후보자만……

○문진석 위원 선관위에 한번 질의해 볼게요.

후보자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후보자가 엄청난 많은 후보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이외에 다른…… 나를 복제해서 많은 후보자들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본인의 영상을 말씀합니까?

○문진석 위원 예, 본인의 영상.

그러면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선거 관리에,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캐파로 그런 것들이 다 점점이 될 수 있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글썽요, 저희는 후보자가 만든 영상이라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50조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맹성규 위원 당연히 그것은 표시를 하는 거고……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후보자가 제작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옛날의 김대중 대통령을 등장시켜서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등등등 하여튼 본인이 친분이 있든 없든 어떤 그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딥페이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가 만들 경우에도?

○이원택 위원 아니, 그게 이제 본인에 한해서만. 가상인물이 본인이지.

○소위원장 김영배 등장인물이 본인일 경우에만?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가상의 등장인물이 후보자일 때만.

○소위원장 김영배 본인 후보자가 제작했을 때?

○장동혁 위원 다른 게 등장하면 안 되고, 지금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이원택 위원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장동혁 위원 그러면 힘들어지지.

○이원택 위원 아니,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동원한다 또는 뭐…… 그건 이제 본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자기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운동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 주고 그러나 제3자를 활용해서 하는 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맹성규 위원님이 어떤 그걸 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전직 대통령하고 본인하고 또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디서 만나서 옛날에 논의했던 그런 장면 같은 거 옛날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가상으로 그것 만들어 가지고 회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 가지고 회의하고 막 ‘우리 맹 차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건 안 되는 거로 해야지.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박정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진석 위원 그러면 그런 딥페이크와 영상 더

빙을 떼서 유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장동혁 위원 힘들어요. 구분이 힘들어.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저희가 3박 4일을 고민해도 그 범주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것은 장동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다 금지를 하고 아예 애초부터 짝을 없애는 게 맞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다면 조문 잠깐 들은 것처럼 일정 기간, 120일이라면 120일 그때는 딥페이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사실과 다른 것은 아예 못 쓰게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원택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엄청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방법을 찾아서 또 후보자들 찾아서 권유하고 꼬시는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 이 법에 관한 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표 하루 전날, 예전에 쓰던 방법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 뭐 사망했다더라, 누구 친척 누구.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갑자기 어디서 큰 사고가 났다고 영상이 돌아다닌다든지, 갑자기 대형 무슨,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날 밤에 막, 다음 날이 투표하는 날인데 예를 들면 그게 막 돌아다닌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으려면 일단은 딥페이크를 ‘딥페이크’라고 쓰게 해야 돌아다니는 그게 가짜더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딥페이크입니다’ 하고 쓰지 않은 것은 국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그것은 완전히 허위사실이고 문제 있는 영상입니다’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오히려 그런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맹성규 위원 아니, 지금 120일 전에는, 이게 논의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준일을 어디로

잡을 건지 문제인데……

○소위원장 김영배 120일은 너무 긴데.

○맹성규 위원 기준일을 어떻게 잡을 건지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기준일이 설정이 되면 그 전에는 이게 뱃페이크라고 표시하고 사용하는 것 오케이,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논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논의하면 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은 명료하고 명쾌, 해석의 여지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그리고 선관위는 표시하고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선관위가 이걸 따라가서 며칠 어 하다가 보면 이미 다 영향력 있게…… 결론적으로는 선거에 불공정한 영향을 적게 주자 이게 취지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준 날짜를 설정하고 그 전에는 표시해서 사용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전면 금지시키든지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강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더 논의할 게 뭐 있어요.

○장동혁 위원 뱃페이크 영상 등장인물을 후보자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악용을 막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영상을 제작해야지, 예를 들면 사람은 안 나오지만 배경에 뭔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기상천외하게 어떻게 해서 사용할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까지 악용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저는 유권자가 판단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성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나와서 그냥 영상으로 하는 것하고…… 장 위원님은 직접 한다 그러는데 누가 할 수 있으면 영상으로 하지 직접 하겠어요, 그럴 듯하게 해 가지고.

○장동혁 위원 그렇지요.

○맹성규 위원 딱 해서 배경도 넣고 음악 같은 것도 넣고 하게 되면…… 그래서 어차피 처음 저희가 규제를 하는 거니까 일단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고 한번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있거나 보완할 게 있으면 차기에 다음에서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차장님, 당원집회 금지가 며칠 전부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선거일

전 30일부터……

○소위원장 김영배 30일부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141조 규정에 의해서……

○소위원장 김영배 30일 전 어떻습니까? 너무 짧은가요?

○장동혁 위원 너무 짧지요. 지금 미국도 60일이잖아요.

○소위원장 김영배 30일, 60일 그래요, 2개가 있거든. 왜냐하면 당내 경선 거치고 해서 실제 공천이 확정되는, 진짜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 보면 한 60일 이내에서 대부분 공천이 되고……

○조해진 위원 경선도 마찬가지로 짧아요.

○장동혁 위원 그런데 공천도 경선도 그런데……

○소위원장 김영배 물론 경선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장동혁 위원 아까 문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면서 문제는 유포될 때 그걸 발견하고 누가 유포했는지를 찾아내고 선관위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우리가 유권자들에게 잘못 인식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줘야 되는 게 저는 그 기간이 금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원택 위원 저도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뱃페이크 기술, 새로운 기술들이 성장하는데 적어도 후보자가 자기 뱃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등장인물 없이 홍보하는 건 그것은 열어 줘야 우리가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후보자가 제작하는 걸 후보자만 등장시키라고 하는 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어도 후보자가 자기 뱃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까지 막으면 또 다른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역의 특정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의 유명한 축구선수들하고 나 그 대학 나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뱃페이크라는 건 그렇잖아. AI에다가 ‘나하고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등장시켜서 축구 게임 좀 하는 것 한번 찍어서 쓰자’ 그렇게 하고 내가

마지막에 나와 가지고 ‘저 누구인데요’ 이랬다 그러면 그것 없는 장면이잖아요. 없는 장면이지만 그럴 듯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걸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것 자체가 페이크잖아.

○장동혁 위원 예를 들면 삽화를 쓰거나 아니면 이게 그린 거구나 아니면 뭔가 한 거구나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면 그 유권자들은 괜찮아요. 삽화를 쓴다거나 뭘 해서 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설정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완전히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유권자들이 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만 지금 딥페이크의 범주에 넣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걸 누구나 봐도 알잖아요. 오인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원택 위원 제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어떤 걸 철회하신다는 거지요?

○이원택 위원 그냥 전면 금지로 가시지요.

○맹성규 위원 단순히 나오는 것, 전면 금지에 동의한다는 거야.

○이원택 위원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냥 접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후보자는 만들어 줄 수…… 왜냐하면 후보자는 제 생각에는 위반을 하거나 시비가 걸리면 본인이 자기가 직접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원택 위원 바로 다이렉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소위원장 김영배 후보자를 박탈당하거나 선거에서 떨어지는데 혹은 처벌을 받는데 후보는 극도로 조심하고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히려 창의적인 발랄한 방향으로 허용해 주는 거면 나는 후보자가 직접 제작하고 표기도 하고 한 것은 그냥 조건 없이 허용해 주고 선거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허위사실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

○이원택 위원 그러려면 다른 등장인물이 없어야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그런데……

○장동혁 위원 일단 전면 금지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누구한테 동의받는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누구 등장시켰는데 괜히 문제될 것 같으니까……

○맹성규 위원 위원장님, 모르겠어요. 일단 기준일을 설정하고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해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그 이후는 이게 규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조해진 위원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전면 금지해 놓고 시행해 보고 2년 뒤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해서 2년 뒤에는 다시 재논의해 보고……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기준일을 제 생각에는 의정보고 금지가 1월 11일부터, 90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법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의정보고가 금지되는 시점을 같이 맞춰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90일 전. 그렇게 하시지요.

○장동혁 위원 저도 90일 정도면, 아까 문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0일 이상만 보장이 된다면 그걸 최대한 선관위에 고발하거나 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된다고 보여져서 90일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하고.

저는 그래도 후보자가 하는 것은 하게 해 주는 게 어떨까, 동의가 안 되시나요?

○장동혁 위원 예.

○문진석 위원 그걸 허용하는 순간에 관련 조치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구비를 해야 돼요.

○맹성규 위원 그래요, 다 만들어야 돼요.

○문진석 위원 그러려면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뭔가 좀 더 논의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소위원장 김영배 전문위원 의견은 어때요? 이걸 과잉금지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문진석 위원 과잉금지가 아니지, 허용은 아니까.

○맹성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90일 이전에는 마음대로 하라 이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문근 다시 지금 논의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표시는 상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표시를 안 하면 안 된다, 표시를 안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

가 되고, 그것은 후보자 제작이든 아니든 전면 금지가 된다. 그러면 전면 금지될 때의 처벌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해 봐야 되는데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실 수도 있겠고요.

○문진석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전문위원 신문근 높은 수준……

○맹성규 위원 아니, 금지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더 낮게 하면 어떻게 해.

○전문위원 신문근 그러면 7년, 1000만 원 이상 그쪽 수준으로……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되겠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앞의 90일 전까지는 처벌을 뭘로 하느냐, 형벌로 할 거냐……

○맹성규 위원 미표시하고 허위사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그걸 형벌로 할 거냐, 벌금으로…… 지금 과태료로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 신문근 지금 제 생각에는 표시를 안 하면, 어차피 지금 선관위에서의 운용기준이 표시 안 한 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하거든요.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뭘로 처벌하냐 이거지.

○전문위원 신문근 허위사실공표죄, 현행 규정에 따라서……

○맹성규 위원 아니, 허위사실을 뭘로, 과태료로 하냐 아니면……

○전문위원 신문근 그러니까 지금은 표시 안 한 것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서 개정안에서 만드는 것을 만약에 120일부터 사용하면 처벌을 하는데 그 이전에 표시 안 한 것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있고 표시한다라고 하고 표시 안 했을 때는 어차피 허위사실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표시 의무 자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하고 그러면 표시를 하고 썼는데 그 안에 허위가 있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고 안 하면 또 허위사실로 처벌되고 안 했을 때는 가중처벌로 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 구조로 일단……

○전문위원 신문근 그러니까 방금 드린 것 1번에서 선거일 전 90일 해 가지고 전면 금지하는 것인데 전면 금지하되 벌칙은 255조가 아니라 5페이지에 있는 딥페이크 부정선거운동죄처럼 하

되 징역은 7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걸로 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시 표시는 두 번째, 4페이지처럼 일반적인 경우 표시하는 것 의무 자체는 과태료로 하시되 허위사실공표죄에 포섭을 하게 되니까 안 표시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일단 의견을 모은 걸로 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러면 소위 자료 25페이지, 현행법의 단어에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소위 자료 횡 자료입니다.

딥페이크에 관한 사항 25페이지, 이 부분은 방금 저희가 딥페이크 관련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들을 현행법에 넣을 것이냐 하는 사실을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정회용 의원님 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하고 계신데 현재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 이런 것을 새로운 기술, 수단이 부각될 때마다 추가하는 것은 현행법 규정을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기왕 앞부분에 딥페이크 관련되는 규제를 신설하게 된다면 이 내용은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게시물 삭제 요청 대상의 정필모 의원님 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게시물 삭제 요청 대상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 이 법 위반 정보 게시자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정필모 의원님 안은 기본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 위법한 정보를 게시한 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게시물 삭제 요청 대상에 직접적으로 게시한 자를 명시하게 되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중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 대한 갖가지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마저도 게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 삭제 요청 대상을 규정하려면 관리·운영자에 게시자가 포함된다고 할 게 아니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님 안의 게시물 삭제 요청 정보, 그다음 페이지 송석준 의원님 안의 선거운동 정보 전송 제한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조사 조작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인공지능을 이용하든 사람이 조작하든 사실은 동일한 건데 굳이 인공지능을 명시하다 보면 반대 해석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현행법 해석이 더 어렵게 되고 규정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포함하더라도 당연히 이 부분은 되는 것이고요.

허위 논평·보도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이용 여론조사 조작한 결과를 공표·보도·논평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부분이 있고요.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도 오늘 방금 앞부분에 논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5페이지에 있는 정필모 의원님 안 이 부분만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지요.

선관위 의견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좋습니다.

그러면 정필모 의원안 중에 있는 두 번째 것이 부분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인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 부분이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최종 할 때 불러주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 논의를 마쳤던 의사일정 제12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위원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전재수 의원님 안은 예비후보자에서 선거운동 방법에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인데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원안 의결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도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정리된 의견을 다시 한번 조금 보고를 받고 바로 그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구체적인 조문은 저희가 또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전달드리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답페이크 영상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상시 답페이크 영상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경우에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보다 가중하는 것으로, 달리 말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표시 안 하고 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액을 가중하고요. 낙선을 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도록 해서 벌금액을 가중하는 그런 형태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금지하는 것하고 지금 상시 하는 것을 조문을 하나로 둘 건가요?

○전문위원 신문근 따로 뒀야 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따로요?

○전문위원 신문근 예.

○장동혁 위원 그러면 상시 이렇게 허용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표시만 하면. 그러면 금지할 때는 그게 같은 조문에 넣으면 예를 들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신문근 예, 그런 식으로……

○장동혁 위원 아니면 '몇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0일 전부터는 그냥 전면 금지된다' 그렇게 들어갈 거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예, 맞습니다.

명확하게 관계를 설정해서 자구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좋습니다. 우리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보고받으시고 또 전체회의 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후속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요.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고생해 주고 있는 국회 보좌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내일 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고 오늘 입법공청회를 거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비롯한 다음 안건 논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영 배 맹 성 규 문 진 석 박 정 하
이 원 택 장 동 혁 조 해 진 최 형 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 문 위 원 신 문 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차 장 허 철 훈
법 제 국 장 김 범 진

○출석 진술인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룡(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